

#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박 동 균\*

## ◇ 목 차 ◇

---

I. 서 론
II. 민간경비인력 전문화의 당위성과 외국사례
III. 사례분석 : 우리 나라 경비지도사 제도의 운영실태
IV.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

## I. 서 론

범죄예방 정책 중에서, 특히 국가전체 차원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와 같은 치안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경찰기관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사회의 각 부문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오늘날에 있어 범죄예방과 대처분야는 더 이상 정부만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sup>1)</sup>. 이미 미국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함께 19세기 중엽부터 민간경비회사로 하여금 범죄예방업무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정부기관의 치안행정능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 안동과학대학 경호경찰학과, 행정학박사.

1) 광대경,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문화 제11집, 1999, p.119.

우리 나라는 1954년 미8군 군납경비를 위해서 최초로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된 이후 민간 경비산업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경기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2001년 3월 31일 현재 전국의 경비업체는 1,945개사에 84,80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한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위주의 영세한 경비업체이고, 주로 청원경찰 배치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에 기준을 맞춘 현행 경비업법의 비현실적인 규제 및 무허가 기계경비업의 난립을 허용하는 미비점은 건전한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을 막아 왔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특수경비업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보다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비의 전문화·과학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정비와 아울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 '고유 사경찰 영역의 인정'과 '민간경비, 방법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공·사 경찰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회의 인식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또한,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일선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경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게 하고, 업체마다 반드시 법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두도록 경비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제도는 그 시행이 아직 초기이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문민간경비제도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와 발전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Ⅱ . 민간경비 인력 전문화의 당위성과 외국사례

### 1. 치안환경의 변화와 민간경비 인력 전문화의 필요성

#### 1) 치안환경의 변화

2) 표창원, "한국 보안/방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월간 시큐리티월드 2000년 1월호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치안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이는 크게 정보화(computer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두가지 환경을 말한다<sup>3)</sup>.

먼저 세계화의 도래에 따른 치안환경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 보면,

첫째, 범죄의 국제성을 들 수 있다. 사람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의 범위도 국제화되고, 그 수준도 국제성을 띠게 되며, 범죄의 국제적 연계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범죄집단의 국제간 이동으로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범죄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세계화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장기 체류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각종 범죄가 예상된다.

셋째는 첩보활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범죄발생 가능성이다. 국가안보와 정치, 외교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의 무역이나 산업기술 등에 있어 국가간의 첩보활동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과 연계된 범죄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화에 따른 치안환경 측면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의 지능화와 고속화이다. 정보화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기술을 이용한 상상을 초월한 지능범죄를 양산하고, 또 범죄활동은 과학화, 기동화될 것이다. 둘째는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증가이다. 컴퓨터조작에 의한 각종 범죄, 신용카드 관련범죄, 그리고 전산망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들이 날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고도산업사회의 범죄이다. 지금까지 산업화, 도시화는 앞으로 도농 통합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산업과 도시의 범위는 더욱 광역화되고, 이는 교통통신망을 더욱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고도산업사회화는 환경범죄, 청소년범죄, 산업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치안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그에 대응하는 치안활동의 내용이나 구조에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선진국에서는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현상에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사정책도 중형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력의 강화나 형사정책상의 중형주의 외에도 날로 증가하는 신종범죄와 국제범죄는 경찰력의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치안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sup>4)</sup>.

이러한 새로운 치안체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제도'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즉,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는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민간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sup>5)</sup>

## 2) 전문화된 민간경비 도입의 필요성

최근 국내외 강력범죄의 증가와 함께 21세기 정보화시대 및 사이버 테러의 지능화, 첨단

3) 정진환, "민간경비와 경찰연구의 새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한국경찰학회, 1999, p.252.

4) 정진환, 전제논문, p.253.

5) 이윤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자격증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27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p.313.

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기술의 개발, 그리고 정보보호, 교도행정과 위생관리, 학교폭력에 방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sup>6)</sup>.

민간경비의 도입 필요성을 한 마디로 사회의 분화속도가 빠르게 진척됨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을 경찰의 업무만으로는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협의의 개념으로 경비라 함은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재해, 혼란 등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으로 제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자위제도에 대신한 전문적 직업인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일반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즉, 공경찰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 중에서 방법·경비 등 일부분분야에 있어서 민간경비제도 하에 있는 업체까지도 동등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민간경비의 도입 필요성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첫째, 이념적 요인으로서 민간경비의 태동 원인으로는 치안담당에 있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사회단위가 대단위·다원화됨에 따라서 국가 영역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개입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병존 현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한 데 따른 것이다<sup>7)</sup>. 결국 복지국가의 문제가 이와 같이 국가 역할의 적정성의 확보문제로 전환된 이상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유효한 방법으로서 국가보다는 시장과 민간부분의 새로운 역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민간경비는 곧 이러한 발생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재정부담의 경감과 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자본시장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민간경비는 대중 자본주의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 치안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상당부분이 자본주의적 경제운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적 요인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조류, 하나의 정책유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각국의 보다 적극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으로 민영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경비·경호 분야에 있어서 경찰이 담당하는 공경비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자본과 기술만이 담보되어 진다면 경찰보다 더 치밀하면서도

6) 김두현,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2001, p.3.

7) Claus Offe, "Some Contradiction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John Keane(ed.),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 MIT Press, Press,1984, pp. 147-148.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 하였다<sup>8)</sup>.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민간경비제도의 도입성은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19세기 중엽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경비기관인 경찰과 함께 민간경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시비, 낮은 처우<sup>9)</sup>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가 '자격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의 총기소지 문제에 대한 민간경비원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총기소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외국의 사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인 경찰에 비해 인력과 예산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초반에 민간경비 인력이 경찰인력을 상회하였으며, 민간경비 예산은 1970년대 후반에 경찰예산을 추월하여 현재는 두 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경비원 수가 경찰관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의 총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선진외국에서는 경비업계에 고학력자가 대거 유입되어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원의 후생복지가 공경비인 경찰에 못지 않게 잘 운용되고 있어 민간경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sup>11)</sup>.

### 1) 미 국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 이상으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정부기관·금융·산업시설·원자력발전소·공항·항만·교량 및 핵운반·교통유도 등에 이르기

8) 권해룡,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치안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24-30.

9) 경비원의 낮은 보수는 직무만족도를 저해하고, 기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률이 높아 민간경비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저해한다(최종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00, p.308.)

10) 이윤근,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2001, p.55.

11) 상계서, p.53.

까지 국가차원이 아닌 수익자부담의 전문경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sup>12)</sup>.

<표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

구	분	지출액(단위:억불)	비율(%)
운송시설	(Transportation)	5	1.0
물류시설	(Distribution/Warehousing)	20	4.0
공익시설	(Utilities/Communications)	22	4.0
숙박업소	(Hotel/Motel/Resort)	25	5.0
교육기관	(Educational Institutions)	28	5.0
건강시설	(Health Care Facilities)	28	5.0
금융기관	(Final Institutions)	42	8.0
소매상	(Retail)	95	18.0
정부기관	(Government)	100	19.0
산업시설	(Industrial/Manufacturing)	134	26.0
기타	(Others)	18	3.0
합	계	517	100.0

자료: Cunningham, William C., Todd H. Tayler,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Chancellor press, 1985, p.198.

### (1) 자격증 제도

미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이직률,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낮은 승진기회와 훈련수준, 저임금 등과 같은 경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sup>13)</sup>. 미국의 자격증 제도는 경비·안전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모든 분야에서 발달하여 1968년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수가 1,912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표 2> 미국 각 주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

자격증의 종류	경비 /순찰	경비사업의 자격증화	등록 (Registration)	민간 범죄수사	경보	무장 호송차량
채용하고 있는 주	-	39	25	37	25	9

12) 안창훈,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27.

13) 강길훈,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1999, p.42.

14) Arthur J. Bilek, Peter P. Lejins,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1997, p. 297.

자료: Cunningham, William C., Todd H. Tayler,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Chancellor press, 1985, p.153.

1985년 미국 각 주의 법률을 조사한 결과, 많은 주에서 민간경비 서비스의 자격증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34개 주에서는 사설탐정(investigative agencies)을, 32개 주에서 경비 회사 운영에 자격증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장호송차량, 경보회사, 경비건, 정보서비스 등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격증제도는 경비보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것으로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사항에서는 자격증 지원자, 유자격 회사, 자격증 소지에 있어서 변경의 고지, 자격증 갱신, 자격증 증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경비업무(경보시스템의 판매 및 설비, 호송업무, 경비 및 순찰 서비스 등)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미국에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구하는 주요한 목적은 바로 고객 보호에 있다. 특히, 민간경비는 경비업무가 다양하여 경비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뢰성과 만족감을 획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당자격증을 갖춘 전문경비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경비업체 또는 경비원이 보유한 최소한의 자격기준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비서비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 (2) 미국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sup>17)</sup>

### ① 기본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미국의 각 주들의 입법기관들은 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강조를 해왔다. 경비원들에 대한 훈련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23개주로 밝혀졌다.

민간경비 자격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는 1973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인 「미국의 민간경찰 : 연구결과 및 권고안(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 Findings and Recommendation)」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i) 모든 분야의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120시간의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 ii) 연방정부의 예산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육자료 확보, 방법론 등 민간경비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되어야 한다.

15) 안창훈, 전계논문, p.31.

16) Arthur J. Bilek, Peter Lejins, Clifford W. Van Meter, op. cit, pp. 300-301.

17) 박병식,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1996.

iii) 주정부 민간기관은 모든 분야의 경비관련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수준의 개인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훈련과목, 훈련시간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v) 경찰행정학 학사와 같은 적절한 고등교육의 수료나 실무경력 요구사항(Minimum Experience Requirements)에 대한 대체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에 관한 여러 주의 법령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규정된 일리노이주에서 1983년에 제정되고, 1985년도에 개정된 “사실탐정과 민간경비에 관한 법률”은 적어도 20시간의 기본적인 경비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음의 과목들이 포함되고 있다.

민간경비업법과 그 한계(Law and Limitation of Private Security), 법집행기관들에의 보고(Reporting to Law Enforcement Agencies), 보고서작성(Report Writing),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조치들(Fire Prevention and other Safety Measures), 화재 및 안전장치(Fire and Safety Equipment), 인간관계(Human and Public Relation).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 법적 권위(Legal Authority), 민간소동(Civil Disturbance), 화재안전(Fire Safety), 응급처치(First Aid), 체포(Arrest),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형법(Criminal Law),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증거수집(Evidence), 자기방어(Self-defense), 감시(Surveillance) 등을 경비원들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버몬트 주는 무장경비원들에게 66시간의 교육과 필기시험, 그리고 무기소지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고, 델러웨어 주는 모근 사설형사와 탐정들에게도 법적으로 총기류 훈련을 받게 하고, 매년 자격증을 재교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② 기계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일리노이 주에서는 민간경비 보급업자, 즉 기계경비 도급업자는 상술한 기본교육이외에 다음과 같은 훈련이 최소한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i) 기초 전자학(Basic Electronics)
- ii) 장비 및 문서필수(Equipment and Writing Requirements)
- iii) 비디오 탐지 및 경보시스템(Video Detection and Alarm Systems)
- iv) 화재탐지 및 경보시스템(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
- v) 전문 시스템(Speciality Systems)
- vi) 주변 탐지(Perimeter Detection)
- vii) 동작탐지 시스템(Motion Detection Systems)

전국 강도 및 화재경보협회(National Burglar and Fire Alarm Association)는 기계경비산업의 가장 최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초보자용(Entry Level)코스로서 약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장차 경보산업 부문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입문수준의 지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시키



는데 있다.

두 번째 부분은 1단계(Level 1) 경보기술자 과정으로서 경보산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 20시간의 교육으로서 경보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이론과 설치방법, 유지관리의 교육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부분은 2단계(Level 2) 경보기술자 과정이며 심층훈련을 제공하는 규격화된 구성단위들(Modules)내에서 학습된다.

네 번째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으로서 경보분야 기술자들이 그들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12시간의 지속적인 교육단위들(Continuing Education Units : CEUs)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 ③ 무장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일리노이주 경비업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요원들에게 총기류 취득자격증(Firearms Certification)을 요구하며 위에서 언급한 20시간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에 덧붙여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기류 훈련과정은 강의실 교육과 사격장 실습의 양자를 다 포함한다.

민간경비 자문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에서도 무장을 요하는 경비원에 대한 총 72시간에 걸쳐 훈련 프로그램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i) 업무배치전 훈련(Pre-assignment Training)

현업에 배치되기 전에 각 경비원들은 적어도 아래에 명시된 8시간의 공식적인 강의실 기본훈련을 받고, 과목들에 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경비업 소개 및 총괄 : 2 시간
- 형사사법제도와 민간경비원(법적 권한과 한계 포함) : 2 시간
- 비상사태시 대처방법 : 2 시간
- 일반적 업무 : 2 시간

#### ii) 총기류 훈련(Weapons Training)

총기류가 지급되기 이전 또는 총기류를 사용해야 하는 일에 배치되기 이전에 무장경비원은 적어도 6시간의 공식적인 강의실에서 훈련을 받고, 이수과목들에 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또한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18시간의 총기류 목표사격과정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 강의실 : - 총기류 사용의 법적, 정책적 제한 : 3 시간
- 총기류 안전, 관리와 소재 : 3시간

- 사격장 : - 사수의 준수원칙(Principle of Marksmanship) : 6 시간
- 단일 행동 코스(Single Action Course) : 6 시간
  - 이중 행동 코스(Double Action Course) : 6 시간

#### iii) 업무배치후 기본훈련 과목

업무수행후 3개월 이내에 경비원은 32시간의 기본훈련 가정을 이수해야 한다. 적어도 4

시간은 강의실 교육이어야 하며, 16시간까지는 현업수행 중의 감독교육이어도 된다. 강의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 경비체제에서의 예방 : 1 시간
- 규정의 법적인 측면과 집행 : 1 시간
- 일상적인 절차 : 1 시간
- 긴급사태와 특별절차 : 1 시간

iv) 연별 총기류 숙달과 자격증의 재교부

매년 무장경비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총 8시간의 재교육 및 총기류 숙달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총기류 사용의 법적, 정책적 제한 : 3 시간
- 목표사격에서의 재사격(사격장에서) : 5시간

전세계적 추세에 의하면, 20여년간 민간경비원들에 의한 총기류 휴대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전에 미국의 RAND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약 절반 가량의 용역경비원들과 자체경비원들이 총기류를 근무시간에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1981년에 Hallcrest에서 시행한 민간경비 관리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 미만의 경비원들이 총기류를 휴대, 2000년경에는 5% 이하의 경비원들만 총기류를 휴대할 것으로 Hallcrest의 연구진들은 전망하고 있다.

④ 일반적 특징 및 고려사항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그 내용과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경비업의 인·허가와 경비원의 면허증제도가 대다수의 주들에서 시행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미국내에 민간경비 분야에는 200여개의 학위수여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비록 독립된 학위는 수여하지 않더라도 1,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sup>18)</sup>.

## 2) 일본

일본 민간경비회사의 업무내용과 종류를 살펴 보면, 시설경비는 상주경비, 순회경비, 보안경비, 공항보안경비, 기계경비로 구분되고 있으며, 혼잡경비는 교통유도경비, 공영경기장 경비 등으로 구분되고, 수송경비는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와 귀중품운반경비, 신변경호는 요인경비와 특수경비, 기계경비는 사업소의 기계경비와 가정의 기계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상의 목적, 종류 등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주경비, 순회경비, 기계경비 등으로 행하여져 왔다<sup>19)</sup>.

18) 신승균,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1995, pp.14-24.

19) 안창훈, 전계논문, p.35.

<표 3> 일본의 경비업종별 경비업자, 경비원수

종 별	경비업체수	구성비(%)	경비원수	구성비(%)
상 주	4,311	44.3	204,804	50.4
순 회	772	7.9		
기 계	789	8.1		
교통유도	4,709	48.4	178,766	44.0
귀중품 현금	339	3.5	18,920	4.7
운반 핵연료 및 위험물질	16	0.2	474	0.1
기 타	102	1.0	2,074	0.5
신변보호	64	0.7	575	0.1

자료 : 가토우 센지로, “일본경비업계의 현황과 미래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민간경비학회, 2001년 6월 15일, 2001, p.49.

일본은 현재 경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비업이 국민들의 자주방범 활동에 힘입어 안전산업으로서 생활속에 정착되고 있다. 민간경비 업자수와 민간경비원의 수는 1999년 12월 현재 9,722개사와 406,109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1962년 755개사의 41,146명에 비해 각각 12.5배와 9.9배가 증가된 상태이다. 앞으로 민간경비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경비산업은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각 기업체에서 상주경비를 저렴한 기계경비로 전환하여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5년 동경에 신축한 사무소 건물의 94%, 주택단지 87%, 그리고 단독주택 31%가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상주경비 분야의 인건비 부담관계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계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인력경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의 대응조치는 경보를 수신한 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일본 민간경비업체의 대처요원들은 평균 4분 36초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집중화 현상, 건물구조의 복잡화, 교통량 증가 등으로 대응시간을 4분 이내로 단축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20)</sup>. 1988년 이후 경비업체가 매년 400여개사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계경비를 중심으로 하여 급속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민간경비도 유사한 경로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1)</sup>.

일본의 경비업법은 이러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기계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제도”, “기계경비업무 관리자제도”, “경비원 검정제도” 등과 같은 3가지 자격증 제도를 두고 있다<sup>22)</sup>.

20) 서재근, “한국 경비업무의 현대화방안에 대한 고찰”, 서재근 정년기념 공안행정논총, 1995, p.501.

21) 안창훈, 전계논문, p.37.

① 기계경비업무 관리자제도

「기계경비업무 관리자」는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신업무와 통신기기의 설치, 운용, 유지, 관리,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up>23)</sup>.

이들 모두 국가에서 실시하는 5개의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② 경비원 검정제도

경비업법 제 11조의 2는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정실시를 도모키 위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정제도를 두고 있다. 즉 경비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검정제도의 실시로 경비원은 지식과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효과적인 교육에 노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검정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공항보안경비, 교통지도경비,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의 네가지 업종에 대해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1996년 현재 경비원의 검정취득 현황을 살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보안, 교통유도, 귀중품운반, 핵연료물질 운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2급에 합격하고 나서 1년 이상 해당경비업무에 종사하면 1급 경비사의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표 4> 경비원 자격보유자 현황

구 분 \ 종 별	공항보안	교통유도	귀중품운반	핵연료운반	합 계
1 급	190	636	747	-	1,573
2 급	911	29,909	5,832	226	36,878
합 계	1,101	30,545	6,579	226	38,451

자료 : 日本全國警備協會, Security Time Vol. 206, 1997, p. 14.

전국에서 1급 합격자는 1,573명, 2급 합격자는 36,878명으로 전년도 보다 4,439명이 증가하여 전체 38,451명에 이르며, 이러한 경비원 검정제도는 소화 57년 경비업법 개정시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자격증제도는 현재 업무의 중요성, 공공성 또는 수요

22) 정승호,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과학화경비 도입방안과 운용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한국생산성본부, 1994, pp.8-9.  
 23) 이윤근, “한국의 무인기계경비 현황과 향후 도입방안”, 과학화경비 도입방안과 운용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한국생산성본부, 1994, p.9.

의 증가를 감안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검정규칙, 제1조에 정해진 공항보안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 운반경비, 귀중품 운반경비의 4종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검정은 각 종별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2급에 합격하고 나서 1년 이상 해당경비업무에 종사하면 1급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검정방법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지정강습을 수료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수검하는 방법이 있다. 검정종별 중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경비협회가 행하는 특별강습을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강습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검정에 합격한 자는 해당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검정합격자임을 표시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이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범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sup>24)</sup>.

### ③ 경비원지도 교육책임자 제도

경비원교육과 필요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자신이 구체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세심한 지도교육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경비원의 지도감독이 방치되거나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경비업법 제 11조의 3에 규정된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제도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교육 계획서의 작성과 실행·관리·기록, 경비원교육의 실시기록의 기재에 대한 감독,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언 등의 의무가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28조).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교육 책임자 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지도교육 책임자 강습은 총 38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필기방법에 의한 수료고사도 행해진다.

강습사항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2시간
-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 8시간
- 경비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14시간
-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14시간
- 기타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시간

## Ⅲ. 사례분석 : 우리 나라 경비지도사 제도의 운영실태

24) 안창훈, 전계논문, p.38.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나,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sup>25)</sup>.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은 국가, 사회의 인식부족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이 뒤늦게 시작된 것도 원인이 되며, 경비업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소극성, 이론적 체계화 노력의 부재 등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sup>26)</sup>.

우리 나라의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도급을 받아 실시하는 경비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청원경찰로 구분한다. 또한, 시설경비는 크게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로 구분되는데, 기계경비업의 경우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대체로 인력과 기계경비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2001년 3월 31일 현재 전국의 경비업체는 1,945개 업체 중에서<sup>27)</sup> 중에서 기계경비업을 신고한 업체는 128개에 5,298명의 인원이 종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비업체 대부분이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민간경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각종 인력 및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제도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 확대와 발전의 부응하여 1997년 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경비 분야의 자격증제도로써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기본교육 15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경비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에 의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여건이 미비함은 물론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경비업자에 의한 교육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up>28)</sup>.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원들에 대하여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교육훈련을 전담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1997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경비원의 교육을 경비지도사가 하도록 하였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sup>29)</sup>을 거쳐 이에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경비지도사의

25) 정진환,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1998, p.284.

26) 백병훈, "사회안전관리체계의 민간화방안 연구", 공안연구 38호, 1995, p.18.

27) 이 수치는 한국경비협회에 등록된 수치이다.

28) 강길훈, 전계논문, p.4.

29)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자격이 주어진다.

### 1)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정하여진 교육을 실시하며,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는다.

또한, 일반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sup>30)</sup>.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 택 형	선택형 또는 기입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등 관계법 포함), 민간경비론	소방학, 범죄학 및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중 1과목

### 30)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목과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공 통 (20시간)	○ 경비업법	4	
	○ 법학개론	2	
	○ 청원경찰법	2	
	○ 경비실기 - 봉술 및 호신술	4	
	○ 교육기법	4	
	○ 입교·졸업·평가	4	
실 습 (24시간)	일반경비 지 도 사	○ 시설경비	5
		○ 호송경비	5
		○ 신변보호	5
		○ 기계경비개론	2
		○ 일반경비현장실습	7
	기계경비 지 도 사	○ 기계경비운영관리	7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7
		○ 인력경비개론	3
		○ 기계경비현장실습	7
		계	

- ① 경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비실기 교육
- ② 경비업법 및 경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각종 법령교육
- ③ 경비원 교육시 필요한 교육기법
- ④ 경비업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
- ⑤ 일반경비지도사로서 필요한 현장실습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명된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경비업법 제12조).

-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하여 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계경비관리교육을 계획, 실시,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기계경비지도사 과정을 강습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기계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경비업법 및 기계경비업무 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
- ② 기계경비 장치 및 운용과 기획, 설계에 관한 교육
- ③ 경비원 교육시 필요한 교육기법
- ④ 경비업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
- ⑤ 기계경비지도사로서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명된 기계경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경비원의 기계경비에 관한 지도, 감독, 교육 계획수립과 실시, 그 기록의 유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비원과 경찰기관, 소방기관과 연락방법 지도
- 기계경비업무에 있어 기계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3)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배치기준(경비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11조)

- ①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지



- 역별로 1인씩을 선임, 배치
-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때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로 선임, 배치
- ②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경비업자에 한하여 선임, 배치하되 그 기준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같다.
- ③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지방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해서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상규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이 정하는 중요공공시설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담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 2. 경비지도사의 배출 현황

1997년 2월 용역경비업법에 의하여 경찰청 방법기획과가 주관, 한국경비협회의 지원으로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9년 10월 제2회 경비지도사 시험에는 7,875명의 경비지도사를 배출하였다<sup>31)</sup>. 2회 시험의 응시자가 1회시험 보다 증가한 것은 응시자격이 3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경비지도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강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격자수가 증가한 것은 경비업계가 경비지도사가 적다는 요지의 탄원을 경찰청에 제기함에 따라 합격자수를 1회보다 3배 정도 높일 것을 약속한 결과이다<sup>32)</sup>.

그러나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44시간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전용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경찰청 위탁관리 지침에 의해 한국경비협회와 대학, 에스원 등에서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기관마다 교육자의 수준차이가 있어 원활한 교육이 곤란하였다<sup>33)</sup>.

<표 5>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자 현황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시험일시		1997. 2. 23	1999. 10. 31
합격인원	계	2,400	7,875
	일반경비지도사	2,160	7,205
	기계경비지도사	240	670

자료: 경찰청, 한국경비협회

31) 2회 경비지도사 시험의 합격자의 직업을 살펴 보면, 현직 경찰이 2,834명으로 가장 많고, 경비업계에서 1,351명, 회사원이 862명, 학생이 755명 등으로 나타났다(장기학, 2001 : 48).

32) 장기학,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 역할 재인식”,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제1회 학술 세미나 논문, 2001, p.50.

33) 강길훈,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공안행정학회보 10집,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p.20.

## IV.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

우리 나라는 민간경비업의 발전과정에서 매년 높은 이직률로 인한 신규채용의 증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비협회와 경비업의 경비원에 대한 교육능력이 미흡하여 경비원의 방법역량이 사회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경비지도사 제도는 현재까지 2회를 거쳐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sup>34)</sup>.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신설

경비지도사의 주요 업무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의 기본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합격한 이후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새로운 경비기법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경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경비지도사는 최소한 1년에 4시간 정도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무교육은 한국경비협회가 주관이 되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비지도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대한 학계, 업계,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함께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경비지도사 교육훈련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2.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시 '신고제'로 전환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르면, "경비지도사의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새로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로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이

34)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보, 2000. 8.

후에도 해임된 사람의 자격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선임이나 해임시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경비지도사에 대한 벌칙의 합리적 조정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규정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경비업자 보다 지위와 권한이 약한 경비지도사가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직무수행에 있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경비지도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경비업자의 경우와 형평성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6, 7> 참조

< 표 6> 경비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경비업법 시행령 28조)

위 반 사 항	적용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허가관청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법제4조제1항	경 고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경비업자가 위법한 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2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3.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경비지도사로 채용한 경우	가. 부주의로 인하여 채용한 경우 법 제10조	경 고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결격사유 또는 자격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서 채용한 경우 법 제12조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4.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월
5.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경 고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6.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경 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시설·경비인력·장비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3조 제3항	허가취소		
8. 경비원에 대한 교육(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22조, 제23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월
9. 특수경비업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제된 경우	영 제3조 제4항	허가취소		

※ 비 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3.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표 7>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경비업법 시행령 29조)

위 반 사 항	적용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이상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 계획에 의한 교육실시 및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2항 영 제21조제1항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2월
2.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9월

※ 비 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지도사 선임에 대한 행정지도와 경비업계의 인식전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의 배치기준과 직무와 의무, 최소 및 정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민간경비회사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sup>35)</sup>,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비지도사 중 일부가 자격증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관할 경찰서의 지도·감독 때만 일시적으로 선임을 하고, 경비지도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도사의 직무를 다할 수 없게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선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0여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수는 경고 조치후 선임을 유도하였다.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그 관할감독관청은 방법과 이다. 앞으로 민간경비업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의 의무

35) 경비협회는 선임대상인원 즉 경비지도사의 절대부족을 이유로 법에 의한 선임, 배치를 2002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못하고, 이제 2회 경비지도사가 배출된 이상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정진환, 2000)

고용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업계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즉, 경비지도사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당장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경비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비용이 들고 번거롭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경비원을 확보하여 경비업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sup>36)</sup> 민간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계약조건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선임을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이 곧 민간경비업자 자신의 이익과도 연계됨을 인식하여야 한다<sup>37)</sup>.

21세기 민간경비산업은 최첨단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경비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공급과 경비산업의 보다 질 높은 상품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sup>38)</sup>.

## 5. 민간경비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민간경비 업무의 전문화는 민간경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교육훈련의 여건을 개선하고, 직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간경비 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sup>39)</sup>.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용교육기관이 없고,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 위탁관리 지침에 의해 경비협회와 대학기관, 에스원 등에서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기관마다 교육자의 수준차이가 있어 원활한 교육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보다 민간경비산업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40)</sup>.

## 6. 필기 시험과목의 조정, 개편

민간경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을 교육, 지도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에 범죄예방에 관련된 각종 이론과 기법, 외국의 사례 등을 총괄하는 「방범론(防犯論)」 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경비업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방호(시설경비), 호송경비 등 관련된 과목

36) 한편, 미국 필라델피아 민간경비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72%가 경비원의 자질과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안창훈, 1997 : 526)

37) 정진환, "경비지도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비협회보, 한국경비협회, 2000

38) 백병훈, 전계논문, p.15.

39) 강길훈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경비업자의 74.5%가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경비업자의 62.9%가 '독립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40) 강길훈, 전계논문, pp.29-30.

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신변경호는 경호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해도 된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경비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시설방호'와 중요물건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의 경우 그 대상이 국내의 경우에도 핵물질 등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경비지도사 합격자의 교육과목 개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로서 실제로 경비현장에서 경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지도사 교육과정 편성과목을 살펴 보면,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학 개론 등 시험과목에 있으면서 이론적인 부분은 축소하고, 오히려 경비지도사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신교육과목이나 경비원의 사고예방, 인사 및 조직관리, 고객에 대한 예절(직업윤리) 등 소양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경비업무 현장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고객만족경영, 경비대상건물 견적방법, 방법기기 설치기법, 현지 대처요령, 출동차량관리, 경비원 교육훈련방법, 지휘통솔론,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등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과목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1)</sup>.

## 8.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경비 인력 교육

최근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산업체의 인력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도 동국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업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대학에 나와 대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하는 등 산학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학협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민간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산학공동 민간경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21세기 치안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그에 대응하는 치안활동의 내용이나 구조에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선진국에서는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현상에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사정책도 중형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력의 강화나 형사정책상의 중형주의 외에도 날로 증가하는 신종범죄와 국제범죄는 경찰력의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치안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41) 안창훈, 전계논문, p.114.

이러한 새로운 치안체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제도’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즉,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는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19세기 중엽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경비기관인 경찰과 함께 민간경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는 1954년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차츰 민간경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수의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되었고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외국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급속한 성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저하, 낮은 처우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가 ‘자격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의 민간경비업을 한층 발전시켜 외국의 경비업계 진입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비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경비지도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초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현재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경비지도사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민간경비 산업의 환경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국내 문헌

- 강길훈(2000),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집, 한국공안행정학회
- (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곽대경(1999),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문화, 제11집
- 경찰청(1999), 경찰백서
- 권혁룡(1999),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치안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현(2001),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 박병식(1996),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 백병훈(1995. 8), 사회안전관리체계의 민간화방안 연구, 공안연구 38
- 서재근(1995), “한국경비업무의 현대화방안에 관한 고찰”, 서재근 정년기념 공안행정논총, 1995.
- 신승균(1995),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훈(1999),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7),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 17집, 경찰대학
- 이윤근(1999),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27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1),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 , 최선우, 안창훈(1998),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연구소
- , (1989) “한국사경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1), “특수경비원의 총기소지에 관한 논의”, 월간 시큐리티 월드 2001년 4월호
- (1994), “한국의 무인기계경비 현황과 향후도입 방안”, 과학화경비 도입방안과 운용사례 발표 및 현장 견학, 한국생산성본부
- 장기학(2001),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역할 재인식”,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제1회 학술세미나
- 정승호(1994),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과학화경비 도입방안과 운용사례 발표 및 현장 견학, 한국생산성본부
- 정진환(1998),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 (1999), 민간경비와 경찰연구의 새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1호, 한국경찰학회  
 ----- (2000), 경비지도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비협회보  
 최종태(2000),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한국경찰학회  
 표창원(2000. 1.), 한국보안/방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월간 시큐리티 월드  
 한국경비지도사협회(2000. 8), 경비지도사보  
 한국경비협회(1998), 한국경비협회 20년사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www.kfbma.or.kr)  
 ----- (2000), 한국경비협회보

Arthur J. Bilek, Peter P. Lejins, Clifford W. Van Meter(1997),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Claus Offe(1984), "Some Contradiction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John Keane(ed.),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 MIT Press

Cunningham, William C., Todd H. Talyer(1985),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Chancellor press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1976), "A Report on the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s including a Model Private Security Licensing & Regulatory Statute"

가또우 센지로, "일본경비업계의 현황과 장래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 학술세미나', 한국민간경비학회, 2001년 6월 15일

警備保障新聞社(1997), 日本警備業年鑑

日本全國警備協會(1997. 7), Security Time Vol. 206.

## ABSTRACT

### The Efficient Operations of the Guard - Instructor's System in Korea

by Park, Dong Kyun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Korea has been operated the guard-instructor system for the acquiring the specialization of the security personnel since 1997, but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guard-instructor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ly and suggests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of that system.